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률, 2018.3.11., 개정]

□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1949년 9월, 건국 직전에 소집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회 전체회의는 건국 후의 국가제도, 사회제도 및 그 밖의 방면의 주요국가정책에 대하여 토의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을 채택하였는데, 이 공동강령이 중국 건국초기에 임시헌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처음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된 이래 1975년, 1978년, 1982년에 전부개정되는 방식을 거쳐 지금의 헌법(약칭: '82년 헌법')은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시행되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결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결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과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결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일부개정 되었다.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을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키고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다.

일부개정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5분의1 이상의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이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3분의2 이상 대표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 목차

원문	번역문
<p>序言</p> <p>第一章 总纲</p> <p>第二章 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p> <p>第三章 国家机构</p> <p> 第一节 全国人民代表大会</p> <p> 第二节 中华人民共和国主席</p> <p> 第三节 国务院</p> <p> 第四节 中央军事委员会</p> <p> 第五节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 地方各级人民政府</p> <p> 第六节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p> <p> 第七节 监察委员会</p> <p> 第八节 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p> <p>第四章 国旗、国歌、国徽、首都</p>	<p>머리말</p> <p>제1장 총강</p> <p>제2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p> <p>제3장 국가기구</p> <p>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p> <p>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p> <p> 제3절 국무원</p> <p>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p> <p>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p> <p>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p> <p> 제7절 감찰위원회</p> <p>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p> <p>제4장 국기·국가·국장·수도</p>